

#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379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6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현행과 같이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(안 제17조).
-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17조의2).

##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는 현행과 같이 하고,

안 제17조의2 제2항 중 “재교부 사실”을 “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”로 한다.

#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17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.</p>	<p>제17조(표창장 등의 재교부)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한다. 다만, 고의적으로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써 재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표창사실확인)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</p> <p>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<u>재교부 사실이</u>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</p> <p>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<u>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</u> 포함되어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

-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표창사실확인)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,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.</p>	<p>제17조(표창사실확인) (<u>현행과 같음</u>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7조의2(기록부의 비치)</p> <p>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